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786호 2010. 10. 6.(수)

## 차 례

###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56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57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58호 인천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1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59호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  
요건에 관한 조례 ----- 1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60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61호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 ----- 1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62호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2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63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	2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64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	2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6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	2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	30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49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32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50호 인천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	33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51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규칙 -----	34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5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 -----	35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28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 규정 -----	36
--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56호

###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를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의 본문 중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지역보건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보건지소”로 한다.

제8조제1항의 본문 중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보건지소장(이하 “보건소장등”이라 한다)”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 “타법령에 의거”를 “다른 법령에”로 한다.

제8조제2항의 본문 중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건소장등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우리구에”를 “인천광역시 서구에”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의 본문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등”을 “진료비 및 수수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보건소장등은 제2항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한 비용은 그 다음날까지, 신용카드로 징수한 비용은 거래발생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57호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참여한 경우”를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한 시금고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를 “지정한 시금고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회에 한하여 재지정하는 경우”를 “재지정하는 경우로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2항 중 “한 개의 금고”를 “1개의 금고(단일금고)”로 하고,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를 “하되, 특별회계와 기금회계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정기준)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의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세무사 등 관련전문가와 구의원 구 관계공무원 등 9인 이내로 인천광역시서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를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와 구의원 구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로 인천광역시서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결”을 “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방법을 심의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10일 이내에 구 표준약정서에”를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 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표준약정서상”을 “금고약정서상”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기타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를 삭제하고,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3조제2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자기자본비율 (안정성)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 무수익여신비율 (건전성) - 대손충당금 적립율(건전성)	25 (9) (6) (7) (3)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5 3	
3. 주민이용의 편의성		19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9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8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10	
	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 나. 구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5	

[별표 2]

##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

### I.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1-가, 나의 경우는 세세부 항목별)로 대상 금융기관이 부여받는 최소 점수는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고, 순위 및 등급간 점수편차는 최대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간에 점수 편차도 균등하게 배분 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내에 있어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부여를 달리 할 수 있다.
  - 가. 평가 세부항목별 금융기관의 순위에 따라 부여하는 점수의 하한을 배점한도의6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제2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5점)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장 최근자료 기준)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5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1)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9점)
  - (2)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3) 무수익여신비율 (건전성, 7점)
  - (4)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건전성, 3점)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18점)****가. 정기에금 예치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에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주민이용의 편의성 (19점)****가. 관내지점 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5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9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발생시 대책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8점)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5점)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5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센터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10점)

##### 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나. 구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점)

-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한 실적 및 추진계획과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58호

### 인천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59호

###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3조(허가요건 등)**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위해방지)** 제3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완비하였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 및 주변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요건 등

사업의 종류	허가요건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소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폭 16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허가받은 용기충전업소가 위해 방지 및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li> <li>2.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고 자동차충전시설의 경우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은 20톤을 초과하여야 한다.</li> <li>3. 충전사업장의 대지 및 저장·충전설비는 자가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 경우는 등기를 하거나 공증된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li> <li>4.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별표 3】 제1호가목 1)의 다), 라), 마)에서 정한 기준의 2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적용한다.</li> <li>5. 변경허가 대상 중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동일부지 내에서 노후된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의 용량증가 또는 가스설비의 수량증가 등 시설의 변경시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li> </ol>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허가는 전용·준공업지역에 한한다. 다만, 기존 허가받은 업소가 공공사업시행지구내에 포함되어 이전할 경우에는 녹지·관리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li> <li>2. 용기보관실의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별표 5】 제1호가목에서 정한 기준의 2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적용한다.</li> <li>3. 판매업소 부지는 도로폭 8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 38㎡ 이상, 사무실 18㎡, 주차면적 23㎡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업소가 공공사업시행지구내에 포함되어 이전할 경우에는 도로폭 4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부지로 이전할 수 있다</li> <li>4. 판매업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1종 보호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다.</li> <li>5. 용기보관실은 「건축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li> <li>6. 변경허가 대상 중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동일부지 내에서 저장설비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li> </ol>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60호

###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를 “노인인력개발센터”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이하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로 한다.

제3조 중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를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다음에 제6호의2를 신설한다.

6의2. 노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와 연계 가능

제4조제1항 중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를 “센터”로 하고,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위탁선정위원회”를 “위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위탁선정위원회”를 “위탁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인복지 전문가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대표자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인천광역시 서구노인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조의 다음에 제5조의2를 신설한다.

제5조의2(위탁심사위원회의 기능)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위탁 사항
2.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사항 심의
3. 제7조의 위탁의 취소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6조제3호 중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탁의사가 없을 때에는 사업개시 3개월 이전”를 “수탁자는 기간만료 또는 사업운영 중 수탁운영 의사가 없을 때에는 종료3개월 이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를 “센터”로 하고, “매 회계 연도”를 “다음 연도”로 하며, “당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을 “매년 10월 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를 “센터”로 하고 “3월말”을 “2월말”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5조 본문 중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14조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 및 센터장은”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61호

###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명칭 및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8조, 제9조, 별표 중 “노인복지회관”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관계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탁 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 중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 [별표 1]

##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제1조의2 관련)

명 칭	주 소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121번길 10 (석남1동 484)
인천광역시서구노인문화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87 (가좌2동 2-3)

[별표 2]

##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기준	사용료	기준시간초과 (시간당)	비 고
대강당	1시간	70,000	20,000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소강당	1시간	30,000	10,000	
강의실	1시간	30,000	10,000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62호

###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우리구”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우리구”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각급 학교”를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우리구”를 “구”로, “시설물”을 “평생교육시설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저소득층 및 엘리트 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외국어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어활성화 사업(권역별 영어교육센터, 주말영어광장, 방학영어캠프, 영어말하기대회, 비바잉글벨 등)

제4조제1항제2호 중 “제10조”를 “제11조”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사업

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0조”를 “제11조”로, “세입·세출 결산서”를 “재정운영내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11인”을 “11명”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분기별”을 “반기별”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 중 “정한다”를 “따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수탁사업자의 특화사업 운영) ① 수탁사업자는 특화사업이 교육사업임을 감안하여 협약(계약)내용을 신의와 성실로써 충실히 이행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업자는 특화사업 운영 시 국민의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한 주말영어광장, 영어말하기 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
2.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개최
3.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프로그램 이용 횟수, 학습 참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마일리지의 운영

③ 제2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 및 우수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④ 수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행사 시기 및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중 “9월말까지”를 “11월말까지”로 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사업계획서”로 하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재정운영내역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63호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품목을 말한다.”를 “품목을 말하며,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이란 별표 10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배출하여야 한다.”를 “배출하여야 하며, 제2조제4항에 의한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은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10에서 정한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0]

##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

연번	품명	규격	연번	품명	규격
1	가습기	모든 규격	17	전화기	모든 규격
2	오디오셋트	높이 1m미만	18	전기밥솥	모든 규격
3	카세트라디오	모든 규격	19	보온밥통(솥)	모든 규격
4	다리미	모든 규격	20	녹즙(믹서)기	모든 규격
5	선풍기	모든 규격	21	토스터기	모든 규격
6	탈수기	모든 규격	22	가스레인지	모든 규격
7	공기청정기	높이 1m미만	23	컴퓨터(본체,모니터,키보드)	모든 규격
8	청소기	모든 규격	24	컴퓨터오락기	모든 규격
9	정수기	높이 1m미만	25	노트북컴퓨터	모든 규격
10	전자렌지	모든 규격	26	모뎀	모든 규격
11	가스오븐렌지	높이 1m미만	27	TM 캐너	모든 규격
12	헤어드라이기	모든 규격	28	프린터기	모든 규격
13	에어컨실외기	모든 규격	29	복합기	모든 규격
14	전기장판	모든 규격	30	팩시밀리	모든 규격
15	전기히터	모든 규격	31	시계(전기및건전지 사용)	모든 규격
16	VTR/DVD	모든 규격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64호

###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녹지경관과란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65호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지원과”를 “인재육성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에 제5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6.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제17조제9호 중 “산림업무”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별표 3의

실과별란 중 “환경보전과”를 “청소행정과”로 하고, “지역경제과”를 “경제지원과”로 한다.

- ②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별표 4의 실과별란 중 “주민복지과”를 “복지서비스과”로 한다.
- ③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인재육성과장”으로 한다.
- ④ 「인천광역시서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지원과장”으로 한다.
- ⑤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1제6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지원과장”으로 한다.
- ⑥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제10조제5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지원과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66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783”을 “785”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65”를 “767”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출장소	동
총 계	<b>785</b>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b>699</b>	-				
3급	1	1				
4급	5	3	1	1		
5급	48	21	2	6	1	18
6급 이하 계	<b>645</b>	-				
별정직 계	2	-				
6급 상당 이하 계	2	-				
기능직 계	83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49호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제1항”을 “조례 제3조”로 한다.

제5조 중 “제2조 및 제3조”를 “조례 제3조 및 제3조”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표와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50호

인천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인천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51호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지원과장”을 “인재육성과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지원과장”으로 한다.

별표 1 구분청 사무분장표의 부서(기관)란 중 “교육지원과”를 “인재육성과”로 하고, 교육지원과 분장사무 중 제19호를 삭제하고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장학재단 운영 및 관리

별표 1 구분청 사무분장표의 부서(기관)란 중 “지역경제과”를 “경제지원과”로 한다.

별표 1 구분청 사무분장표의 환경보전과 분장사무 중 제60호부터 제76호까지를 삭제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52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0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280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합 계	계		785		
	정 무 직	계	1		
	일 반 직	계		699	
		3 급		1	행정 1
		4 급		5	행정 2, 기술 2, 행정·기술 1
		5 급		48	행정28, 의무 4, 시설 3, 행정·보건 2, 행정·환경 1, 행정·시설 1, 행정·공업·농업 2, 행정·녹지·시설 2, 행정·공업·농업·녹지 1, 행정·환경·통신 1, 보건·간호·의료기술 1, 행정·농업·공업·시설 1, 행정·보건·간호·약무1
		6 급		152	행정78, 농업 1, 녹지 3, 시설 13, 보건 2, 환경 4, 공업 3, 간호 2, 전산 1, 약무 1, 세무 4, 사회복지 4, 통신 1, 행정·농업 2, 행정·세무 4, 행정·사회복지 4, 행정·공업 2, 행정·보건 3, 행정·환경 2, 행정·시설 7, 녹지·시설 1, 행정·공업·시설 1, 행정·농업·세무 1, 행정·보건·간호 1, 행정·보건·환경 1, 간호·의료기술·약무 1, 보건·간호·의료기술 4,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7 급		216	행정81, 세무27, 전산 3, 사회복지15, 공업 9, 농업 1, 녹지 3, 수의 1, 보건10, 의료기술 4, 간호 5, 환경 6, 시설34, 통신 3, 행정·사회복지 6, 행정·농업 4, 수의·농업 1, 보건·간호 1, 보건·간호·의료기술 2
		8 급		214	행정89, 세무11, 전산 5, 사회복지18, 공업 5, 농업 1, 녹지 4, 해양수산 1, 보건15, 의료기술 3, 간호 7, 환경11, 시설31, 통신 2, 행정·사회복지 1, 행정·농업 1, 보건·공업 1, 보건·간호 1, 의료기술·식품위생 3, 환경·공업 1, 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 3
		9 급		63	행정37, 세무 4, 사회복지 8, 공업 1, 녹지 1, 보건 1, 환경 2, 시설 8, 행정·환경1,
		별 정 직	계		2
	6 급			1	일반비서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기 능 직	7 급	1	일반비서 1
		계	8 3	
		6 급	4	운전 1, 조무 1, 기계 1, 전기 1
		7 급	2 5	기계 2, 운전10, 조무 8, 사무실무 4, 전화상담 1
		8 급	1 4	기계 1, 통신 1, 운전 5, 조무 3, 사무실무 2, 전화상담 1, 전기 1,
		9 급	2 2	운전12, 조무 9, 전기 1,
		10 급	1 8	운전 7, 조무11
구 분 청	계		<b>5 0 3</b>	
	정 무 직	소 계	1	
	일 반 직	소 계	<b>4 5 0</b>	
		3 급	1	행정 1
		4 급	3	행정 1, 기술 1, 행정·기술 1
		5 급	2 1	행정12, 시설 3, 행정·보건 1, 행정·환경 1, 행정·시설 1, 행정·공업·농업 1, 행정·녹지·시설 2
		6 급	<b>1 1 3</b>	행정58, 세무 4, 전산 1, 사회복지 4, 공업 3, 농업 1, <b>녹지 3</b> , 보건 2, 환경 4, 시설11, 통신 1, 행정·세무 3, 행정·사회복지 3, 행정·공업 2, 행정·보건 2, 행정·환경 2, 행정·시설 7, 녹지·시설 1, 행정·보건·환경 1,
		7 급	<b>1 4 7</b>	행정43, 세무22, 전산 3, 사회복지15, 공업 8, 농업 1, 녹지 3, 수의 1 환경 6, <b>시설30</b> , 보건 5, 통신 3, <b>행정·사회복지 6</b> , 수의·농업 1,
		8 급	1 3 5	행정53, 세무 8, 전산 5, 사회복지 8, 공업 5, 농업 1, 녹지 4, 해양수산 1, 보건10, 환경11, 시설26, 통신 2, 보건·공업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별 정 직	9 급	3 0	행정 14, 세무 3, 공업 1, 녹지 1, 환경 2, 시설 8, 행정·환경 1
		소 계	2	
		6 급	1	일반비서 1
	기 능 직	7 급	1	일반비서 1
		소 계	5 0	
		6 급	4	운전 1, 조무 1, 기계 1, 전기 1
		7 급	1 4	기계 2, 운전 2, 조무 7, 전화상담 1, 사무실무 2
		8 급	1 0	기계 1, 통신 1, 운전 3, 조무 3, 전화상담 1, 사무실무 1
		9 급	1 4	운전 5, 조무 8, 전기 1
	10 급	8	조무 8	
	의회사무국	계		1 8
일 반 직		소 계	1 2	
		4 급	1	행정 1
		5 급	2	행정 2
		6 급	3	행정 3
		7 급	3	행정 3
		8 급	2	행정 2
		9 급	1	행정 1
기 능 직		소 계	6	
		7 급	4	운전 1, 조무 1, 사무실무 2
		8 급	1	사무실무 1
	9 급	1	운전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보 건 소	계		59	
	일 반 직	소 계	56	
		4 급	1	기술 1
		5 급	6	의무 4, 보건·간호·의료기술 1, 행정·보건·간호·약무 1
		6 급	10	약무 1, 간호 2, 행정·보건·간호 1, 보건·간호·의료기술 4, 간호·의료기술·약무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7 급	16	보건 4, 의료기술 4, 간호 5, 보건·간호 1, 보건·간호·의료기술 2
		8 급	21	행정 1, 보건 3, 의료기술 3, 간호 7, 보건·간호 1, 의료기술·식품위생 3, 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 3
		9 급	2	사회복지 1, 보건 1
		기 능 직	소 계	3
	9 급	1	운전 1	
	10 급	2	운전 1, 조무 1	
출 장 소	계		42	
	일 반 직	소 계	37	
		5 급	1	행정·농업·공업·시설 1
		6 급	8	행정 1, 시설 2, 행정·세무 1, 행정·보건 1, 행정·농업 1, 행정·농업·세무 1, 행정·공업·시설 1
		7 급	16	행정 2, 세무 5, 공업 1, 보건 1, 시설 4, 행정·농업 3
		8 급	11	세무 3, 보건 2, 시설 5, 환경·공업 1
		9 급	1	세무 1
		기 능 직	소 계	5
	7 급	1	운전 1	
	8 급	2	전기 1, 운전 1	
	9 급	1	조무 1	
10 급	1	조무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동	계		1 6 3	
	일 반 직	소 계	1 4 4	
		5 급	1 8	행정14, 행정·보건 1, 행정·공업·농업 1, 행정·환경·통신 1, 행정·공업·농업·복지 1
		6 급	1 8	행정16, 행정·농업 1, 행정·사회복지 1
		7 급	3 4	행정33, 행정·농업 1
		8 급	4 5	행정33, 사회복지10, 행정·사회복지 1, 행정·농업 1
		9 급	2 9	행정22, 사회복지 7
		소 계	1 9	
	기 능 직	7 급	6	운전 6
		8 급	1	운전 1
		9 급	5	운전 5
		10 급	7	운전 6, 조무 1

【별표 2】

##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제2조 관련)

구분	직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합계	계		5 0 3			
	정무직	계	1			
	일반직	계		4 5 0		
		3 급	1	행정 1		
		4 급	3	행정 1, 기술 1, 행정·기술 1		
		5 급	2 1	행정12, 시설 3, 행정·보건 1, 행정·환경 1, 행정·시설 1, 행정·공업·농업 1, 행정·녹지·시설 2		
		6 급	1 1 3	행정58, 세무 4, 전산 1, 사회복지 4, 공업 3, 농업 1, <b>녹지 3</b> , 보건 2, 환경 4, 시설11, 통신 1, 행정·세무 3, 행정·사회복지 3, 행정·공업 2, 행정·보건 2, 행정·환경 2, 행정·시설 7, 녹지·시설 1, 행정·보건·환경 1,		
		7 급	1 4 7	행정43, 세무22, 전산 3, 사회복지15, 공업 8, 농업 1, 녹지 3, 수의 1 환경 6, <b>시설30</b> , 보건 5, 통신 3, <b>행정·사회복지 6</b> , 수의·농업 1,		
		8 급	1 3 5	행정53, 세무 8, 전산 5, 사회복지 8, 공업 5, 농업 1, 녹지 4, 해양수산 1, 보건10, 환경11, 시설26, 통신 2, 보건·공업 1		
		9 급	3 0	행정14, 세무 3, 공업 1, <b>녹지 1</b> , 환경 2, 시설 8, 행정·환경 1		
		별정직	계		2	
			6 급	1	일반비서 1	
	7 급		1	일반비서 1		
	기능직	소 계		5 0		
		6 급	4	운전 1, 조무 1, 기계 1, 전기 1		
		7 급	1 4	기계 2, 운전 2, 조무 7, 전화상담 1, 사무실무 2		
		8 급	1 0	기계 1, 통신 1, 운전 3, 조무 3, 전화상담 1, 사무실무 1		
		9 급	1 4	운전 5, 조무 8, 전기 1		
		10 급	8	조무 8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기획홍보실	계		39	
	일반직	소계	36	
		5급	1	행정 1
		6급	10	행정 8, 전산 1, 통신 1
		7급	16	행정 8, 전산 3, 시설 2, 통신 3
		8급	9	행정 4, 전산 3, 통신 2
	기능직	소계	3	
		7급	1	전화상담 1
		8급	1	전화상담 1
		9급	1	조무 1
총무과	계		30	
	정무직		1	
	일반직	소계	23	
		3급	1	행정 1
		4급	1	행정 1
		5급	1	행정 1
		6급	7	행정 7
		7급	4	행정 4
		8급	8	행정 8
		9급	1	행정 1
	별정직	소계	2	
		6급	1	일반비서 1
		7급	1	일반비서 1
	기능직	소계	4	
		7급	1	조무 1
		8급	1	운전 1
9급		2	조무 1, 운전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인재육성과	계		13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 1
		6급	4	행정 4
		7급	3	행정 2, 시설 1
		8급	4	행정 4
		9급	1	행정 1
재무과	계		17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 1
		6급	3	행정 3
		7급	3	행정 3
		8급	3	행정 2, 전산 1
		9급	1	행정 1
	기능직	소계	6	
		6급	1	운전 1
		7급	3	운전 2, 사무실무 1
		8급	1	운전 1
		9급	1	조무 1
	세무과	계		42
일반직		소계	42	
		5급	1	행정 1
		6급	7	세무 4, 행정·세무 3
		7급	21	세무21
		8급	9	세무 8, 전산 1
		9급	4	세무 3, 행정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민원봉사과	계		17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 1
		6급	4	행정 4
		7급	2	행정 2
		8급	7	행정 7
		9급	1	행정 1
		기능직	소계	2
	7급		1	조무 1
	9급		1	조무 1
경제지원과	계		24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공업·농업 1
		6급	6	행정 2, 공업 2, 농업 1, 행정·공업 1
		7급	9	행정 1, 공업 5, 농업 1, 수의 1, 수의·농업 1
		8급	5	행정 1, 공업 1, 농업 1, 해양수산 1, 시설 1
		9급	1	공업 1
	기능직	소계	2	
		7급	1	기계 1
		10급	1	조무 1
재난관리과	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시설 1
		6급	4	행정 2, 행정·시설 2
		7급	1	행정 1
		8급	3	행정 1, 시설 2
		9급	2	행정 1, 시설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주민생활 지원과	계		32	
	일반직	소계	32	
		4급	1	행정·기술 1
		5급	1	행정 1
		6급	7	행정 3, 사회복지 2, 행정·사회복지 2
		7급	15	행정 3, 사회복지 9, 행정·사회복지 3
		8급	8	행정 2, 사회복지 6
복지 서비스과	계		24	
	일반직	소계	23	
		5급	1	행정 1
		6급	6	행정 3, 사회복지 2, 행정·사회복지 1
		7급	12	행정 2, 사회복지 6, 보건 1, 행정·사회복지 3
		8급	3	행정 1, 사회복지 2
		9급	1	행정 1
	기능직	소계	1	
		7급	1	조무 1
문화관광 체육과	계		15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 1
		6급	3	행정 3
		7급	3	행정 3
		8급	6	행정 6
		9급	1	행정 1
	기능직	소계	1	
		6급	1	조무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환경보전과	계		24	
	일반직	소계	23	
		5급	1	행정·환경 1
		6급	5	환경 3, 행정·환경 2
		7급	4	환경 4
		8급	10	행정 1, 환경 8, 공업 1
		9급	3	환경 2, 행정·환경 1
	기능직	소계	1	
		8급	1	사무실무 1
위생과	계		16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보건 1
		6급	4	보건 2, 행정·보건 2
		7급	4	보건 4
		8급	7	보건 6, 보건·공업 1
청소행정과	계		21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 1
		6급	4	행정 2, 환경 1, 행정·보건·환경 1
		7급	4	행정 2, 환경 2
		8급	9	행정 2, 환경 3, 보건 4
		기능직	소계	3
	8급		1	운전 1,
	9급		2	운전 1, 조무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건 설 과	계		34	
	일 반 직	소 계	28	
		4 급	1	기술 1
		5 급	1	시설 1
		6 급	6	행정 2, 시설 2, 공업 1, 행정·시설 1
		7 급	11	행정 3, 시설 6, 공업 2
		8 급	8	행정 1, 시설 5, 공업 2
		9 급	1	시설 1
		기 능 직	소 계	6
	6 급		1	전기 1
	7 급		1	기계 1
	8 급		2	기계 1, 조무 1
	9 급		2	운전 1, 전기 1
	건 축 과		계	
일 반 직		소 계	19	
		5 급	1	시설 1
		6 급	5	행정 1, 시설 3, 행정·시설 1
		7 급	5	시설 5
		8 급	7	행정 1, 시설 6
		9 급	1	시설 1
기 능 직		소 계	6	
		6 급	1	기계 1
		7 급	1	조무 1
		8 급	1	조무 1
		9 급	2	조무 1, 운전 1
		10 급	1	조무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도시개발과	계		29	
	일반직	소계	27	
		5급	1	행정·녹지·시설 1
		6급	6	행정 2, 시설 2, 행정·시설 1, 녹지·시설 1,
		7급	12	행정 2, 시설 10
		8급	7	행정 2, 시설 5
		9급	1	시설 1
	기능직	소계	2	
		7급	1	조무 1
		10급	1	조무 1
녹지경관과	계		26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녹지·시설 1
		6급	6	행정 2, 녹지 3, 행정·시설 1
		7급	5	행정 1, 녹지 3, 시설 1
		8급	7	행정 1, 녹지 4, 시설 2
		9급	3	행정 1, 시설 1, 녹지 1
	기능직	소계	4	
		8급	1	통신 1
		9급	1	조무 1
10급		2	조무 2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토지정보과	계		26	
	일반직	소계	24	
		5급	1	시설 1
		6급	7	행정 2, 시설 4, 행정·시설 1
		7급	6	행정 2, 시설 4
		8급	6	행정 2, 시설 4
		9급	4	행정 1, 시설 3
	기능직	소계	2	
		9급	1	조무 1
		10급	1	조무 1
교통행정과	계		16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 1
		6급	4	행정 4
		7급	2	행정 1, 시설 1
		8급	3	행정 2, 시설 1
		9급	1	행정 1
	기능직	소계	5	
		7급	2	조무 2
		8급	1	조무 1
		9급	1	운전 1
10급		1	조무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교통민원과	계		22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 1
		6급	5	행정 4, 행정·공업 1
		7급	5	행정 3, 공업 1, 세무 1
		8급	6	행정 5, 공업 1
		9급	3	행정 3
	기능직	소계	2	
		7급	1	사무실무 1
		10급	1	조무 1

【별표 5】

**출장소에 두는 지방공무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합 계	계		42	
	일반직	계	37	
		5 급	1	행정·농업·공업·시설 1
		6 급	8	행정 1, 시설 2, 행정·세무 1, 행정·농업 1, 행정·보건 1, 행정·농업·세무 1, 행정·공업·시설 1
		7 급	16	행정 2, 세무 5, 공업 1, 보건 1, 시설 4, 행정·농업 3
		8 급	11	세무 3, 보건 2, 시설 5, 환경·공업 1
		9 급	1	세무 1
		계	5	
	기능직	7 급	1	운전 1
		8 급	2	전기 1, 운전 1
		9 급	1	조무 1
		10 급	1	조무 1
		계	5	
	검단출장소	계		42
일반직		계	37	
		5 급	1	행정·농업·공업·시설 1
		6 급	8	행정 1, 시설 2, 행정·세무 1, 행정·농업 1, 행정·보건 1, 행정·농업·세무 1, 행정·공업·시설 1
		7 급	16	행정 2, 세무 5, 공업 1, 보건 1, 시설 4, 행정·농업 3
		8 급	11	세무 3, 보건 2, 시설 5, 환경·공업 1
		9 급	1	세무 1
		계	5	
기능직		7 급	1	운전 1
		8 급	2	전기 1, 운전 1
		9 급	1	조무 1
		10 급	1	조무 1
		계	5	